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 1.23.(월) 조간	배포	

책임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(02-2100-2680)	담당자	류성재 사무관(02-2100-2693) 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83)
	금융위 은행과장 김 진 흥(02-2100-2950)		이수암 사무관(02-2100-2676)
	금감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(02-3145-7700)		최명근 수 석(02-3145-7706)
	금감원 회계제도실장 윤 동 인(02-3145-7750)		성길현 팀 장(02-3145-7752)

## 제 목 :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

- ▶ 6대 핵심과제, 12대 세부과제를 통해 회계부정(분식회계·부실감사)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,
- ▶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每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“**상장회사 회계점검**”을 실시하겠습니다.

◇ 그동안의 ‘회계학회 연구용역’(16.8~12월)과 관계기관 합동\* 「회계제도 개혁 TF」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「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」 마련 → 6대 핵심과제/12대 세부과제

\* 금융위·금감원, 한국공인회계사회, 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

- 분식회계·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「선임·감사·감독」 과정 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
-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서 지정이나 감리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全數 검증하는 “회계점검” 추진

- I. **선임** : 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 
②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

- ① (상장회사 지정 확대) i) 지정사유를 늘려 현행 직권지정제 확대  
ii)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 도입

※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로 약 10%, 선택지정제로 약 40% → 총 50%의 회사가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 
⇒ 보수덤펍, 연속감사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 가능

- ② (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)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거나, 품질관리가 미흡한 ‘무늬만 회계법인’이 아닌 명실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장회사를 감사

- II. **감사** : ③ 핵심감사제(KAM) 적용 확대

- ④ 국제적 수준과 동일하게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

- ③ (핵심감사제)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(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)는 '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, '23년까지 전체 상장회사에 확대 도입

- ④ (비감사용역 제한)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,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뿐만 아니라,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

- III. **감독** : ⑤ 감리주기 단축 (현재 25년 → 10년내로 절반 이상 단축)

- ⑥ 제재(행정벌 및 형사처벌) 실효성 대폭 강화

⇒ 전체 상장회사 회계 투명성과 회계법인 감사 신뢰성을 검증하고,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「一罰百戒」

- ⑤ (감리주기 단축)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하고 특히,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회사는 6년內 우선감리

- ⑥ (제재 실효성) 자본시장법上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 강화 → 형벌은 5~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, 과징금 상한(20억) 폐지

# I. 추진배경

- ◇ 최근 대우건설('13년), 모뉴엘('13년),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('15.8월~) 등 대형 회계부정으로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피해 발생 및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
  - 회사 분식회계와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론이 확대되는 가운데, 회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



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① (회사)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
  -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,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입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,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도 소극적
  - 경영진의 단기 실적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
- ② (감사인) 감사인의 소극적인 감사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
  - 자유선입제 下 회계법인간 치열한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,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되는 구조
  -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 의견거절 등 결단력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甲乙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, 회계업계의 자율규제·정화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음
- ③ (감독당국)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
  -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은 낮아, 경각심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
  - 감리인력 부족으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(상장회사 약 25년) 됨에 따라 회사·감사인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음

## 2. 그간의 대응노력 및 평가

-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해외 선진 제도 도입 등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
  -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,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 시행중('16년~)
  - 지난해,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\*을 추진('17.1월 국회제출)
    - \* 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, ②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'경영진' → '감사'(또는 감사위원회) 이관, ③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, ④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
- 다만,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지적 →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

< 해외 평가 >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이나 세계경제포럼(WEF)에서 발표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전세계 하위권 수준  
 < 국내 평가 > 회계투명성에 대한 회사·학계·공인회계사 대상의 금감원 설문조사('15년말) 결과 → 보통 수준인 4.22점(7점만점) 기록

※ 관계기관 합동\* 「회계제도 개혁 TF」 구성·운영('16.8월~)을 통해 회사·감사인·감독당국을 포괄하는 대책 모색  
 \* 금융위·금감원, 한국공인회계사회, 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  
 ⇒ 감사인 선임~감독·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투명성·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

## II. 추진방안

### 1 (회사 측면)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

#### 1. 내부 감사(감사 및 감사위원회)에 의한 감시·통제 강화

① (내부감사 조사·조치)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 
 →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(법무법인/회계법인 등)를 선임하여 조사·조치하고,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

○ 同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·조치를 적극 지원(예 : 외부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 등)하도록 규정

② (공시 강화) 내부감사-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·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

○ 아울러,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\*를 의무화하여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\* (주요내용) 감사인 선임경과(감사인선임위·추천위 운영경과 등), 과거 3년간 선임방식(자유수입/지정), 자유수입시 결정방식(수의계약/공개입찰), 최근 3년간 감사·비감사용역 수행현황,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등

▶ 내부감사가 회계부정 발생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내부감사의 실질적 감사기능을 강화

#### 2.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

① (포상금 상향)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→10억원으로 상향

† 포상금 = 등급별 기준[부정행위 중요도에 따라 5등급 구분, 5백만~5천만]\* × 기여율(신고내용의 충분성, 감리·조사 협조 정도 등, 0~100%)

\*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2배 적용

※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해당 과징금 규모와 연동(예 : 과징금의 10%)하여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안 추가 검토 후 결정(미국도 유사)

② (내부신고자 보호)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<sup>①</sup>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<sup>②</sup> 신설

\* ① (현행) 3천만원 이하 → (개선) 5천만원 이하

② (신설)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(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)

▶ 기업이 의도적·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 적극 유도

#### 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

① (감사인 인증수준 강화) 회사(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)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'내부회계관리제도'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'검토' 수준에서 '감사'로 상향\*\*

\* 회사는 신뢰할만한 회계정보 작성·공시를 위하여 다음 내용의 규정 및 조직 필요  
 1. 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, 오류 통제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
 2.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 등

\*\* 검토 : 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(서면 중심) vs. 감사 : 검사·관찰·조회 등을 통한 별도의 사실확인 등 다양한 입증 요구

○ 다만,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('18년 감사보고서) 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

\*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: '18년 감사보고서 ~ (149개 법인)  
 " 5천억원 " : '20년 도입 검토 (220개 법인)  
 " 1천억원 " : '22년 " (741개 법인)  
 대상법인 전체 : '23년 "

② (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,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·감사 및 추추에게도 보고하도록 함

\*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

③ (회계담당자 관리) 내부회계 담당이사·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·코스닥 협회에서 별도등록 관리 →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

▶ 회계정보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게 하여 회계정보 정확성 제고 및 분식회계 근원적 억제

#### 4.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

-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·거래소에 대한 사업·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-감사인간 이견조율, 감사자료 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**제한적 연기 허용**
  - \* 감사에 확신이 없더라도 기업의 요구, 감사계약 유지, 소송가능성(관리종목 지정시 등) 등 고려, 기한에 쫓겨 사업·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향
- 다만, 투자자에게 **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, 별도 절차\***와 **요건\*\***도 적용
  - \* i)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**회사-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**
  - ii) 금감원에 미리(제출기한 7일전) **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**
  - iii) **지연사유를 미리 공시**
- \*\* i) **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**로 제한
- ii) 해당 종목이 **기간연장 중임**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(DART/KIND)
- iii) **기한연장은 연 1회**로 제한

▶ 감사인의 확신을 얻지 못한 감사보고서가 생산·유통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, 그만큼 **재무정보에 대한 신뢰 향상**

### 2 [감사인 측면] 감사품질 제고

#### 1.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

- 현재 감사인 **자유선임**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, 관리종목, 부채비율 과다, 감리결과 조치 등\*에 따라 **감사인 지정**
  - \* 상장예정법인, 횡령·배임 발생 상장회사,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법인 등
- 회사-감사인간 “**甲-乙관계**”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않고 감사할 수 있는 **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**를 유발한다는 지적
  - ⇒ 따라서 분식회계 발생시 **사회·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·산업**에 대해 **지정 확대**

#### < 직권지정제 확대 >

- 증선위에서 **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**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**현행 지정제**(이하, 직권지정)의 **지정사유 추가**
  - ① 분식회계로 **해임권고**(제재종료후 5년 内)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**횡령·배임 前歴 임원**이 있는 **상장회사**(재취업 포함)
  - ② 거래소 규정상 **공시 불이행, 공시번복·변경** 등으로 **불성실 공시법인**으로 지정된 상장회사(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)
  - ③ **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**,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**부정행위 적발 회사**

#### < 선택지정제 도입 >

- (**운영방식**)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**회계법인 3개**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‘**선택지정제**’ 도입
- (**지정 대상**)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**상장회사**
  - ① (**경제적 영향**)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, 공공성 등을 고려 → **대규모 기업집단**(자산총액 5조 이상) 소속 회사, **금융회사**
  - ② (**취약**)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- i) (**지배구조**) **소유·경영 미분리, 잦은 최대주주 변경**
    - ii) (**재무상황**) **최근 소액공모/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/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,**
    - iii) (**기타**) **투자주의환기종목(코스닥),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, 동종업종 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**
  - ③ (**회계투명성 유의업종**) 증선위가 정하는 ‘**회계투명성 유의업종**’에 속하는 상장회사(현재 미정) → 예) **수주산업**

□ (예외)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 인정

❶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

\* 다만,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→ 뉴욕증권거래소, 런던증권거래소 등

❷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
\* 다만,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

□ (추천방식)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「감사인추천위원회」(현행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)를 구성하고,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(pool)을 증선위에 제출

⇒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,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

※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(안) :  
감사 1인, (사외이사가 있을시) 사외이사 2인 이내,  
지배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와 임원인 주주 외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,  
지배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외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,  
지배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외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

□ (시행시기)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, '6년 자유선임+3년 지정' 원칙을 적용

○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\*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

\*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→ 예) 개정법 '17년 공포, '19년 시행시 '13~'18년까지의 선임현황(계속 자유선임, 지정, 감사인 변경 여부 등)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

- ▶ i)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 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
- ii)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줄이고,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 가능

## 2. 핵심감사제(KAM) 확대 도입

□ 수주산업에 적용('16.7월~)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도입

† 핵심감사제 개요(Key audit matters) :

감사인-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·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

○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(자산 2조 이상 상장사) 우선 적용['18년 사업보고서~('19년 작성)] → 자산 5천억 이상('20년 사업보고서~) → 1천억 이상('22년 사업보고서~) → 유가·코스닥 전체('23년 사업보고서~)

- ▶ i) 감사인-회사간 협의로 핵심감사사항 선정 → 감사인 협상력 강화
- ii)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중점감사 → 감사품질 제고
- iii) 단순 감사의견이 아닌 상세한 감사결과 제공 → 투자자 보호

## 3.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

□ 비감사용역(컨설팅 등)을 수입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'울'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'비감사용역 금지' 대상을 선진국(미국·EU)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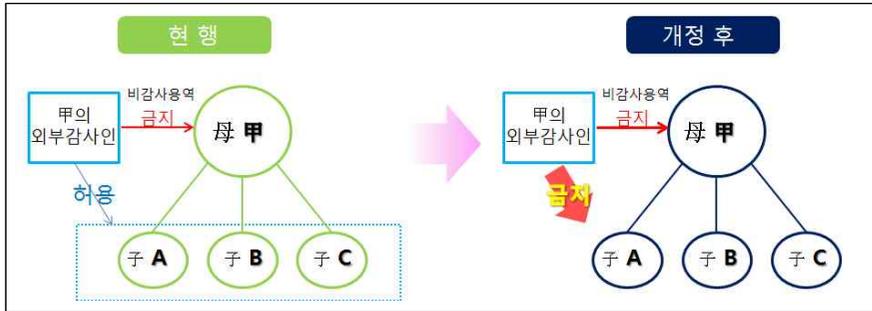
※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:

회계기록·재무제표 작성, 내부감사 대행,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업무, 민사·형사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, 인사·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등

❶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

- i)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·가치평가 업무
- ii) 자금조달·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
- iii)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

- ② 아울러,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



➔ 자회사 등의 비감사용역을 통한 감사의견 구매(opinion shopping)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여 감사인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

#### 4.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

-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\*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

\* (산정방식) 회사 자산규모별, 업종별로 Big 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평균값을 산출·조정

- 다양한 기업 사정(자산규모·업종 등)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(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)
-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(인센티브) 또는 제재를 통해 유도
  -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 → 선택지정제 적용
  - 회사·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(감리결과에 따른 제재 양정시 고려)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적극 활용

➔ 회사와 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최소한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감사시간을 확보하도록 유도

### 3 [감독당국 측면] 사전적·사후적 감독 강화

#### 1.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

-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

\* 현재는 형식적 요건(자본금 5억원 이상,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)만 충족 되면 금융위에 등록(공인회계사법 §24)할 수 있고, 상장회사 감사 가능

-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,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,

※ (예시) ①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, ② 독립성 정보 취합·관리체계 구비, ③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, ④ 품질관리 인력 확보, ⑤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 (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여부 결정)

-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취소
-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 (예: 중요도 III 이상)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
-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➔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등록·유지요건을 운영하여 영업 보다는 감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유도

\* ① 감사시간 확보, ② 내부 심리 및 품질관리노력 강화 → 투자자 보호  
③ 영업 인센티브 → 감사노력으로 전환, ④ 저가수입 문제해결

#### 2.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

- 모든 상장회사\*에 대해서 每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를 실시하고, 특히 감사인 지정(직권지정/선택지정)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기로 감리

\* 총 1,958개('16.12말 기준, 코스피, 코스닥 상장회사)

- ① (인력·조직확충) 10년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 확충 → '17년 심사감리조직("기획감리실") 추가 신설

② (감리권한 강화) 심사감리시에도 공개된 자료뿐 아니라, 회사·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'자료제출 요구권' 부여 → '강화된 심사감리' 수행

- 정밀감리시 금융실명법상 '비밀보장의 예외'(일명, '계좌추적권')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·추적 추진

※ 현행 심사감리시에는 재무제표 특이사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시자료에 대한 추세·비율분석 등을 분석·검토하고,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여 자료제출 요구, 의견진술, 재산조사 등의 방법 이용 가능

➔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감리를 위한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"회계부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, 처벌된다"는 경각심 고취

### 3. 분식회계·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

① (회사 임원)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등 신분 제재 강화

○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,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 연장 및 감사인 지정·감리 등 별도조치 부과

② (과징금) 회사·감사인·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

① (회사)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[분식금액의 10%로 하되, 20억 초과시 20억(외감법 전부개정안) → 분식금액 20%로 하고 상한 폐지]

② (감사인)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한도 폐지  
(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 2배→5배, 20억원 한도→폐지)

③ (개인)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(감사위원 포함)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

- 아울러, 개인 과징금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일정 비율(예:10%)로 책정하는 방안 검토

④ (부과시효)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→8년으로 연장하고,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 중지

③ (형벌) 현행 5~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, 5~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~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, 징역·벌금의 필요적 병과 추진

○ 또한 분식규모가 큰 경우\* 유기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

\* 예) 분식으로 이익 10% 이상 흑자 전환 또는 20% 이상 이익 변동 등

④ (몰수·추징) 부정청탁·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·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·추징

\* 현재 감사인(소속 공인회계사 포함), 내부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·이익을 수수한 경우 필요적 몰수·추징(외감법 §19)

⑤ (손해배상책임 강화)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(3년→8년)

\* 현재, 증권관련 집단소송 인정, 입증책임 전환 등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가 인정되어 단기시효(3년 ↔ 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기간은 10년)를 적용하고 있으나,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, 감리주기 단축(감사조서 보존기간 8년) 등 고려하여 연장

⑥ (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 금지)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금전적 제재 성격 강화를 위해 추가적립금 반환 금지

\* 현재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기존 적립금에 더하여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3년후 반환하고 있음  
→ 추가적립금의 제재적 성격 고려, 반환 금지

➔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분식회계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 기대

### 4.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

□ (공시의무 강화) 공시 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

○ (회사)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기한내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공시

○ (감사인)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·시간, 이사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함

- (회계교육 강화)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\*를 통해 교육 콘텐츠 공유,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 총괄

\* 금융위·회계기준원(공동주관), 금감원, 한공회, 상장협, 코스닥협, 대한상의 등

- 회계 담당 임·직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여 회계교육 의무화

▶ 체계적 교육을 통해 회사 실무자들의 회계처리 능력을 높이고, 강화된 공시를 통해 시장 감시기능 활성화 도모

### III. 향후 추진계획

- 2월중 **공청회** 등\*을 거쳐, 「종합대책 최종방안」을 확정할 예정

\* 감사인 선임제도 등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의

- 확정된 방안에 따라, **관련 법규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** 추진

- (1분기) 세부방안 마련 → (2분기) 입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fsc@korea.kr

